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 10.

특 허 청
(디자인심사정 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창작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디자인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작자 정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안 제50조)

정정시기 일부 제한(등록결정~설정등록) 및 증명서류 강화

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규정 삭제(안 제42조 및 제62조)

무권리자 출원임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에 통지 절차 삭제

다. 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명확화(별지 제3호서식)

기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및 부적합한 관리항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이후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원인이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에 창작자를 추가(제1항 본문에 따른 창작자의 추가는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만 해당한다) 또는 정정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절차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때 창작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

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창작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정이유를 기재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류 1통

제62조제1항제3호 중 “무권리자임”을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6호가목 표 중 국가연구개발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	-------------------------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6호마목(1) 중 “【연구과제명】 , 【기여율】 ”을 “【연구과제명】 ”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

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디자인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

【연구사업명】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스마트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제품 서비스 선행디자인
개발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기간】 2019. 4. 1. ~ 2020. 12. 31.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 중 일부 창작자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경우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① ----- ----- ----- ----- ----- ----- -----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이후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②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전까지는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에 창작자를 추가(제1항 본문에 따른 창작자의 추가는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만 해당한다) 또는 정정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절차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때 창작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창작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보정이유를 기재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

2.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 신청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u>무권리자임을</u>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략)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 신청 등) ①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임</u>----- ----- ② ~ ④ (현행과 같음)
---	---